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함(안 제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7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

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II. 검토의견

1.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안 제6조)

안 제6조제2항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한편,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료요청 대상과 협조 의무를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서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였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생 략)	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치유관광산업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② ----- ----- ----- <u>시·도지사, 관계 기관</u> <u>및 단체의 장에게</u> ----- ----- -----

자는 <u>정당한 사유가</u>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략)	-----<u>특별한 사정이</u>----- -----. ③·④ (생략)
---	---

2.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안 제10조)

안 제10조 제목은 “치유관광사업의 양수 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목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제목만으로 해당 조문이 규정하려는 바를 파악하기 어려워 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로 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안 제10조제1항은 치유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자 등이 치유관광사업 등록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¹⁾를 참고하여 치유관광사업을 ‘상속’하는 경우의 승계에 관한 내용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제정안은 치유관광사업의 양수인이나 합병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대상을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으로 규정하여 등록을 전제로 하는 치유관광사업자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측면이 있어 그 대상을 “치유관광사업자”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제정안 제10조제1항은 같은 조의 다른 항과 다르게 “지위”가 아닌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어 승계 대상을 다른 항과 마찬가지로 “지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1) 「먹는물관리법」 제25조(영업의 승계) 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먹는물관련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③ (생략)

한편, 안 제10조제2항은 치유관광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가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종전의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후단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제 정 안	수정의견
제10조(치유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치유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치유관광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치유관광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u>치유관광사업 시설</u> 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후단 신설>	② ----- ----- ----- <u>치유관광시설</u> ----- ----- ----- <u>. 이 경우 종전의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u>
1. ~ 4. (생략)	1. ~ 4. (생략)
③·④ (생략)	③·④ (생략)
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u>그</u> 내용을 검토하여	⑤ ----- ----- <u>제8조제2항에 따른</u>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등----- -----.
-------------------------	------------------------------

3.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안 제11조 및 제12조)

안 제11조는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에 대해 규율하면서도 인증의 절차와 결격사유 등에 관한 법률조항을 두지 않고 있고, 안 제12조는 우수치유관광‘시설’의 인증취소를 규정하면서 제2호와 제3호에 시설의 인증과는 다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업 및 사업자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음.

이에 유사 입법례²⁾를 참고하여 제11조에 인증절차와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12조에서 시설의 인증과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였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① (생략) <u><신 설></u>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① (생략) <u>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u>

2)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② ~ ④ (생 략) 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u>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u> 3. <u>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인증받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만, 해당하게 된 사업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u> 4. (생 략)	<u>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u> 1. <u>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2. <u>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u>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u> ④ ~ ⑥ (생 략) 제12조(인증의 취소) ----- ----- ----- ----- -----. 1. (생 략) <삭 제> <삭 제> 4. (생 략)
---	---

4. 보고·검사 등(안 제22조)

안 제22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원센터,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치유관광사업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치유관광사업자와 같은 민간 사업자의 사업장에 공무원이 출입하거나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보고·검사 등의 대상에서 치유관광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였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전문지원기관, 지원센터, 치유관광사업자</u> 에 대하여 그 업무·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 ----- ----- <u>전문기관,</u> <u>지원센터</u> ----- -----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5. 양벌규정(안 제25조)

안 제25조는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 또는 개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면서, 법인 또는 개인이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책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양벌규정을 두면서, 과실책임에 근거하여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양벌규정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위헌³⁾이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25조</u>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u><단서 신설></u>	제25조(양벌규정) ----- ----- ----- ----- <u>제24조</u> ----- -----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날 법인의 반사회적 법익침해활동에 대하여 법인 자체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일단 “형벌”을 선택한 이상, 형벌에 관한 헌법상 원칙, 즉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할 경우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밖에 없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8 결정 등).

6. 과태료(안 제26조)

안 제26조제2항은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 등(등록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이므로 과태료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였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등록기관의 장</u> 이 부과·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문화체육관광부장관</u> 이 부과·징수한다.

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률용어의 일치, 법률 내용의 정합성 확보 및 조문체계의 정비 등 경미한 체계·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서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화 실)